

[공고번호 : 울산-주력산업육성-18]

가스연료 선박기자재 상용화 제품의 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한 마케팅 지원 수혜기업 모집 상시공고

2023년도 중소벤처기업부와 울산광역시가 지원하는 지역주력산업육성사업의 지원프로그램을 안내하오니, 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4년 1월 1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울산광역시장, 울산테크노파크원장

1 지원개요

○ 지원내용 및 규모(2건 내외)

지원프로그램	지원내용	지원규모	
마케팅	◦ 국문/외국어 카달로그 및 브로슈어 ◦ 기업 및 제품 홍보영상, 브랜드 제작 ◦ SNS 활용 마케팅 ◦ 전문지, 신문지, 지면, 옥외 광고 ◦ 홈페이지 리뉴얼(신규 제작 미지원)	기업당 최대 10백만원	최대 8백만원
디자인	◦ 패키징 디자인 ◦ BI/CI제작, 제품 디자인 컨설팅 등		최대 5백만원
전시회	◦ 부스임차료, 장치비, 운송비 ◦ (국외)편도항공료, 통역비 등		국내 : 3백만원 국외 : 10백만원

○ 지원대상

- 지역 내 가스연료 선박기자재산업 및 전·후방 연관 산업 분야 중소기업.

KSIC	코드명	KSIC	코드명
25923	도장 및 기타 피막 처리업	30331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25929	그 외 기타 금속 가공업	30332	증류기, 열교환기 및 가스 발생기 제조업
25999	그외기타분류안된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30391	강선 건조업
28123	배전반 및 전기 자동제어반 제조업	30392	합성수지선 건조업
29111	내연기관 제조업	30393	기타 선박 건조업
29131	액체 펌프 제조업	30399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앵커코드)
29132	기체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		

② 신청방법

- 지역산업종합정보시스템(RIPS, www.rips.or.kr)을 통해 신청서 작성 후 접수
- 제출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RIPS 업로드
 - 원본 제출 불필요, 필요시 프로그램별 상세 계획서 요구

③ 평가방법 및 기준

○ 평가방법

- 예비진단(필수) 신청기업의 참여제한 등에 대한 사전 검토→면담/현장실태 조사(필요시)→선정평가(필수)

○ 평가기준

산업분야	지표(배점)
가스연료 선박기자재	지원필요성(20), 기업수행역량(15), 조직구성(20), 목표설정의 구체성 및 타당성(25), 기대효과(10), 지원결과 활용 및 관리계획(10)

○ 우대가점

- 아래 항목 해당 시, 우대가점 반영(최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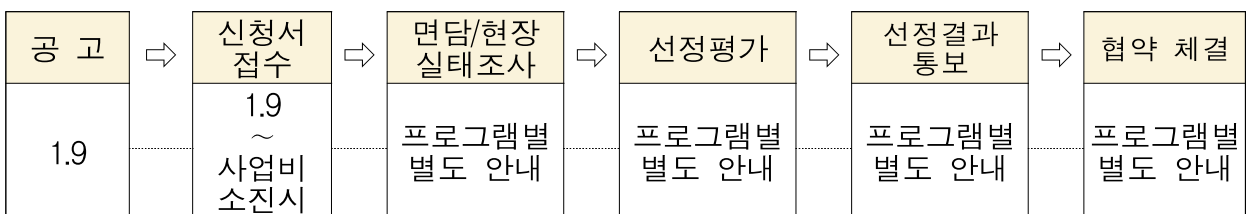
구분	우대가점 기준	증빙서류	가점
1	최근 3년 이내 지역특화 R&D 종료기업	지역사업평가단 확인 (평가결과 공문)	3
2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우수 활용기업	인증서	1
3	중소기업중앙회가 선정한 명문장수기업	인증서	2
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인증된 원산지인증수출자인 경우	인증서 (유효기간 인증서에 한함)	1
5	지역중소기업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기징후 단계 "주의·심각"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	테크노파크 확인	2

④ 유의사항

- 신청서 및 제출서류는 반드시 지정양식을 사용하여 제출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평가결과는 신청기업에 개별통보)
- 제출된 서류가 허위 또는 중복지원인 경우 지원취소 및 협약해지 됨
- 부가가치세 등 사후환급금은 지원 및 기업부담금에서 제외되어 수혜기업에서 별도집행하며 지원금액과 기업부담금을 합한 총 사업비는 부가세가 제외된 금액임
- 선정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등 주요내용은 조정될 수 있음
- 선정결과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사업수행 중이라도 선정을 취소 및 사업을 중단할 수 있음
- 과제종료 후, 선정기업은 주관기관의 사업성과 활용을 위한 제반자료 요청 시 적극 협조해야 함
- 중소기업부에서 수행 중인 성장사다리 지원사업 및 지자체 등 정부 및 유관기관과 동일 또는 유사사업 중복지원 불가
 - 중복수급 등 부정행위 적발 시 해당 지원과제의 지원금 환수 및 제제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정부지원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부정수급과 관련된 기업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제34조, 동법 시행령 제59조, 지원기관 규정 및 지침에 의거하여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음
- 협약기간 내 사업과 관련된 문제로, 형사 또는 민사로 소추된 경우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음(단, 협약기간 내 무혐의 또는 소취하가 확정된 경우 잔여사업비 사용 가능)

⑤ 추진일정

- 공고기간 : 2024년 1월 19일(금) ~ 사업비 소진시까지
- 접수기간 : 2024년 1월 19일(금) ~ 사업비 소진시까지



⑥ 사전지원제외 대상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최근년도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기준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
- 최근년도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기준 자본전액 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지역산업육성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에 준함

⑦ 문의처

- 지원프로그램 관련 문의

산업분야	프로그램명	담당자명	전화번호	이메일
가스연료 선박기자재	사업화 지원	백다인 주임연구원	052-219-8645	bdi@utp.or.kr